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자제 촉구 결의안

(김경훈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987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8월 12일

발 의 자: 김경훈, 고광민, 곽향기,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원중, 김원태, 김종길,
김지향, 김혜영, 김혜지,
박춘선, 송경택, 이병윤,
이상욱, 이희원, 최민규,
허·훈, 황철규 의원(20
명)

1. 주문

- 국회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의 영역까지도 무분별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양적으로도 지나치게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요구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 수행에 막중한 지장을 주고 있음. 이에 국회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지난 2023년 국회가 서울특별시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수가 1만 1천 건을 상회함.
- 국회는 현재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의 영역까지도 무분별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한을 침범하고 있으며, 양적으로도 지나치게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요구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 수행에 막중한 지장을 주고 있음.

- 시민의 봉사자인 공무원들이 국회가 요구한 자료 작성에만 매달려 고유 업무가 마비되고 대시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
- 이에 국회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를 자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법」

4. 이송처

- 국회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자제 촉구 결의안

- 지난해인 2023년 국회가 서울특별시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수가 1만 1천 건이 넘었다.
국회가 「국회법」 제128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따라 안전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조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료제출 요구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데 있다.
- 먼저 국회는 현재 국가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구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매년 국정감사 때도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불문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자치분권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에 역행하여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며, 국회와 지방의회의 중복되는 감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 또한 국회는 양적으로도 지나치게 방대한 분량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이

면 매년 반복적으로 10년 또는 5년간의 똑같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수천, 수만 장에 달하는 종이가 낭비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스트레스와 야간·휴일 근무로 인해 과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시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들이 국회가 요구한 자료 작성에만 매달려 고유 업무가 마비되고 대시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를 자제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하나, 국회는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에 대해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중단하라.
- 하나,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자료제출 요구를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고, 불필요하게 방대하거나 중복된 자료제출 요구를 자제하라.
- 하나, 국회는 매년 국정감사 시마다 똑같은 자료를 반복 요구하는 관행을 없앨 수 있도록 제출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2024. 08. 12.

서울특별시의회의의원일동